

#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3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2

다. 상 정 일 자 : 제59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4차 총무사회위원회(97. 6. 20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황인호 문화공보담당관)

### 가. 제안이유

그동안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별 부정기적으로 각종 구정 홍보물을 발간하여 행정력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상회보, 사하구공보, 각종 구정홍보물 등을 사하구보에 통합 게재하여 97년도 하반기부터 발간, 사하구보의 질적 향상과 구정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와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사하구 구보조례명을 「사하구보」 조례로 개정
- 구보의 명칭을 규정 : 「내고장 사하」 (안 제2조)
- 발행인, 편집인 규정 : 발행인 ⇒ 구청장, 편집인 ⇒ 부구청장(안제3조 제2항)
- 구보 게재사항 확대 조정(안 제4조)
  -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, 구정에 대한 의견 등 추가, 조정 등
- 편집위원회 조정(안 제7조)
  - 편집위원장 : 구청장 ⇒ 부구청장, 부위원장 : 부구청장 ⇒ 기획실장
- 상임위원(2인이내)등 편집위원 위촉, 해촉, 재위촉 근거마련(안 제10조)
- 명예모니터제 도입 및 역할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외부인 기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근거마련(안 제16조)
- 구보에 유료광고 게재 근거 마련(안 제18조)
- 편집위원(상임위원 포함)에 대한 실비 변상 규정 구체화(제1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,

○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각종 홍보물을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행정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하구보(명칭 : 내고장 사하)에 반상회보, 공보, 기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합하고, 구정시책,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, 구의회 의정활동 상황 등 구정 전반사항을 게재,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주민이 알게하고,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행정 P.R기능을 수행토록하는 조례로서

○ 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조례의 명을 「사하구보」 조례로, 구보의 명칭을 「내고장 사하」로 하고
- 구보게재 사항을 구정시책, 구의회 의정활동,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7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
- 구보 편집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위원의 위촉, 해촉, 재위촉, 위원장의 직무, 상임위원의 복무, 회의 등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과
- 구보 발행을 위한 자료수집, 명예 모니터 제도 도입 및 역할, 외부인의 기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고
- 효율적인 시행으로 많은 구민이 구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고,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많은 제시와 반영, 다수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촉매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게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